매입임대 입주자 유의사항

■ 임대보증금(잔금) 납부

○ 입주(예정)일까지 임대보증금(잔금) 미납 시 **연체료가 가산**됩니다.

■ 전입신고

○ 입주 후 **14일 이내 반드시 전입신고**를 하신 후 **공사에 주민등록등본 1부를 제출**하셔야 합니다. 또한, 입주하는 주택에 관리사무소가 있을 경우 입주예정일 등을 알려야합니다.

▹ 제출방법 : 팩스(051-811-9345) 또는 이메일(YB@bmc.busan.kr)

※ 제출 후 10분 이내 확인전화 부탁드립니다.(☎ 051-810-9927, 1338)

■ 공과금(전기, 가스 등)

○ 기초생활수급자이신 경우,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수도 및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○ 입주 시 전기(한전 ☎ 123), 가스(도시가스 ☎ 1544-0009) 등의 요금을 정산하고, 명의변경 신청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.

■ 생활 등

○ 공동생활공간(복도, 계단, 옥상 등)에 물건을 적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, 퇴거 시에는 반드시 적치물을 수거해야 합니다

○ 주택관리업체에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, 업체에서 부과하는 관리비 등(공용부분 부분, 공과금 배분 등)을 성실히 납부하여야 합니다.

○ 쾌적한 공동주택 생활을 위해 공동생활규칙(소음·소란 방지, 세대 내 흡연, 애완동물 관리 등)을 준수해 주시고,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주택 전용부분과 그 내부시설물 외에 추가, 신설, 보완, 변경, 이동 등에 대하여 임차인이 시설물 설치 요구 시 비용은 임차인 부담원칙으로 하고, 퇴거 시 원상복구와 그 비용은 반환되지 않습니다.

○ 입주자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임대주택 및 그 내부시설물의 파손·멸실, 원형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입주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원상복구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며, 해당비용은 우리공사 「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」에 따라 부과됩니다.

■ 계약해지 및 재계약

○ 계약해지 신청은 퇴거일 1개월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.

- 방문(부산도시공사 1층 열린민원실 4번 창구) 또는 온라인(BMC청약센터) 신청 가능

○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.

○ 퇴거 시에는 공동요금(관리비 등) 및 공과금은 퇴거일 기준으로 정산한 후 납부하고, 확인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

○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관련법령에 따른 재계약요건 충족 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.(임대료 체납 시 재계약 불가)

[참고 : 관련 연락처]
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연락처</th></tr>
<tr><td>주택 관련 하자 또는 불편사항
(잔금 납부 후 세대 비밀번호 확인)</td><td>☎ 051) 810-8568, 8569[팩스 : 051) 811-9345]</td></tr>
<tr><td>임대료 및 체납금 관련 문의</td><td>☎ 051) 810-1258
※ 임대료 납부고지서는 매달 20일 우편으로 발송되며, 당월 말일까지 임대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.(입금 시 본인명의로 입금)
※ 임대료 자동이제 신청은 이용하시는 은행 또는 BMC청약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.
<table><tr><td>20일 이전 입주</td><td>입주일~말일까지 당월 임대료 부과</td></tr><tr><td>20일 이후 입주</td><td>입주일~말일까지 임대료 익월 임대료에 가산되어 부과</td></tr></table></td></tr>
<tr><td>재계약 및 해약 관련 문의</td><td>☎ 051) 810-1309, 9927</td></tr>
</table>